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2004. 7. 4.

제 출 자 정응섭의원 등 10인

□ 제안이유

- 시 기구를 개편하여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확정(2004. 6. 30)됨에 따라
- 우리시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의정활동에 기여코자함.
-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원의 지위 향상 도모

□ 주요골자

- “행정국”을 “행정기획국”으로 한다(안제3조제2항제2호)
- 재정경제국, “보건환경국중 환경보건과, 녹지공원과”, 직속기관중 성남시농업기술센터, 사업소중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,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 (안제3조제2항제3호)
- 문화복지국, “보건환경국중 보건위생과”, 직속기관 중 성남시 수정보건소, 성남시중원보건소, 성남시분당보건소, 사업소 중 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. (안제3조제2항제4호)
- 위원회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(안제11조제1항내지제3항)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중 “행정국”을 “행정기획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중 재정경제국, “보건환경국중 환경보건과, 녹지공원과”, 직속기관 중 성남시농업기술센터, 사업소중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,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중 문화복지국, “보건환경국중 보건위생과”, 직속기관 중 성남시 수정보건소, 성남시중원보건소, 성남시분당보건소, 사업소 중 성남시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내지제3항 위원회의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,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. 자치행정위원회 공보담당관실, 감사담당관실, 행정국, 사업소 중 성남시중앙문화 정보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.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, 직속기관중 성남시농업기술센터, 사업소 중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, 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4. 사회복지위원회 문화복지국, 직속기관 중 성남시수정보건소, 성남시중원보건소, 성남시분당보건소, 사업소 중 성남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,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중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5.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, 건설교통국, 사업소 중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관한사항 제11조(간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.	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자치행정위원회 ----- 행정기획국----- ----- ----- 3. 경제환경위원회 ----- 보건환경국중 환경보건과, 녹지공원과----- ----- ----- 4. 사회복지위원회 ----- 보건환경국중 보건위생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 제11조(간사) ①----- 부위원장----- ②부위원장----- ----- ③----- 부위원장이----- -----